2013년 12월 3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smba.go.kr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12월29일(일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: 공공구매판로과 • 과장 김문환(042-481-4489), • 주무관: 신상규(042-481-8918)

생산설비 부족한 연구개발기업도 공공입찰 참여 가능해져

– 중소기업청, 생산설비가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애로 해소 등,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에 나서 –

□ **창업초기기업,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.**

□ **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에서는**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창업초기기업의 애로 해소 및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생산시설이 부족한 **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『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』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**한다

○ 벤처기업 등 **연구전문기업의 경우**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품생산은 외주 생산을 주로 하고 있어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**생산설비가 부족하여 공공조달시장 참여 불가**

○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**협업 승인을 받아 '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*'을 개발한 경우에는** 협업에 참여한 생산업체 등 **협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직접생산확인** 기준에서 정한 **조건을 충족하면** 해당제품 생산에 **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에 대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발급**하여 공공조달시장 참여 가능

*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: 판로지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제품, NEP(신제품), NET(신기술),우수조달물품 등

<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>

◇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, 생산시설, 생산인력과 필수공정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각 품목별로 규정

◇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하청생산제품, 수입제품, 대기업제품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성과 많은 기업들이 진입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반된 가치를 조정·반영하여 규정

□ **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에게 손톱밑 가시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않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, 해소**하기 위하여

○ 지난 7월부터 해당 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수집된 애로사항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설치한 '기준개선 의견함'에 제출된 의견 등, **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**한 애로 사항을 **공청회를 거쳐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선안에 반영하였다.**

□ **위 사항 이외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**

○ **규모가 작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** 제품별로 임차가 불가한 품목을 제외하고 **원칙적으로 임차가 가능하도록 한**, 이른바 **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여 임차 가능한 제품을 확대** 하였고

* 추가된 임차 가능 제품 : 섬유로프, 토양개량제, 이스팔트콘크리트 등

○ **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**하기 위하여 **교정시설내의 구내 작업장도 공장등록을 인정**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도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하게 되었다.

○ 또한 **창업초기기업, 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**

- **제조시설의 면적기준 완화**(상업용 오븐, 취사용기구, 천막류, 통조림, 타일)

- 소기업의 직접생산확인 부담완화를 위하여 **외주 가능한 공정은 필수공정에서 삭제**(크레인, 토목섬유)하여 외주를 인정하고

-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검사를 한 번에 할수있는 **복합 검사설비를 인정**하여 기업의 설비 부담을 완화한다(가로등기구, 경관조명기구, 전기스탠드, 실내조명기구,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, 다중화장치)

○ 이외에도 제품 재질 또는 제조방법 다양화에 다른 조정, 세부품명 변경, 생산시설과 생산공정 일치, 문구 명확화, 오기정정 등 **모두 42개 제품의 기준을 개선**

□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의 시행으로 창업초기기업이나 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**특히 생산시설이 부족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** 것으로 **기대**된다.

< 붙임 >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품별 주요 개정사항 요약 1부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신상규 주무관(☎ 042-481-89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(붙임)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사항 요약

□ 총칙 개정 내용

○ 소기업·소상공인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**생산시설 임차보유 인정(제10조)**

- 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임차 불가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 인정

○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의 「교도작업운영지침」에 따른 **구내작업장도 공장등록 인정(제9조 제2항)**

○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술개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**협업을 통하여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업체**의 경우 **협업체가** 직접생산 확인 **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직접생산확인서 발급**(제17조)

□ 경쟁제품별 세부기준 개정 내용

○ 개정대상 경쟁제품 : 42개 제품

- 기준완화 : 22개 제품

· 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하여 생산설비 임차보유 인정 제품 추가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 완화

-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조정 및 문구 명확화 등 : 20개 제품

· 제품 재질 또는 제조방법 다양화에 따른 조정, 세부품명 변경, 생산시설 및 생산공정 일치, 오기 정정, 문구 명확화, 증빙자료 명확화 등

○ 기계류 공통적용 사항 : 1건

- [별첨 27-1] 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 대상 양식 변경 및 열교환기에 대한 자격증 범위 확대 등**(기준완화)**

○ 제품별 세부기준 개정사항 요약

연번	경쟁 제품명	구분	현재 기준	개정(안)	개정사유
1	방 음 판 및 방음벽	기준 완화	<문구 수정>	○ 직접생산정의 문구 수정	- 기준명확화
			○ 세부품명 -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	○ 세부품명 -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	- 오타수정
			○ 생산시설 - 가설방음판 ① 가설형 전면판 및 후면판 자동성형기	○ 생산시설 - 가설방음판 ① 자동성형기	- 가설방음판은 전면판 후면판 구분 없이 한면만 생산하여 전면, 후면으로 조립 가능
			○ 생산시설 - 프레스(금형포함)	○ 생산시설 - 프레스 및 금형	- 기준명확화
2	케이블트레이	기준 현실화	<삭 제>	○ 바닥밀폐형(퍼포레이트형 포함) 기준 삭제	- 바닥밀폐형(퍼포레이트형 포함)과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는 동일 제품이므로 중복 삭제
3	파형관	오타 수정	○ 생산시설 - ② 리콜케이터	○ 생산시설 - ③ 리콜게이터	- 오타수정
4	모터펌프	기준 완화	○ 생산시설 - 전자(또는 초음파) 유량계의 경우 공인 교정성적서 확인	○ 생산시설 - 전자 유량계의 경우 공인 교정성적서 확인	- 정확도가 낮은 검사설비(초음파 유량계) 삭제
			- 목형(자가보유)	- 목형 삭제	- 목형은 주물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계 현실에 맞게 기준완화
			○ 토출량 시험설비의 전자유량계 - 토출구경 200mm미만의 경우 (생략)전자유량계 100mm 및 150mm 보유 - 토출구경 200mm이상 ~ 600mm미만의 경우	○ 토출량 시험설비의 전자유량계 - 토출구경 200mm미만의 경우 (생 략) 전 자 유 량 계 50mm~150mm 중 2종 이상 보유 - 토출구경 200mm이상 ~	- 업계현실을 반영하여 토출량 시험설비의 전자유량계 규격변경

연번	경쟁 제품명	구분	현재 기준	개정(안)	개정사유
			(생 략) 전 자 유 량 계 200mm 및 300mm 보유	600mm미만의 경우 (생 략) 전 자 유 량 계 200mm~500mm 중 2종 이상 보유	
5	밸브	기준 완화	○ 생산공정 <추 가>	○생산공정 - '강판'을 이용한 체크밸브 생산공정 추가	- 원자재 다양화 반영
			○ 체크밸브 검사설비 - ② 플러그게이지(PT나사게이지)	○ 체크밸브 검사설비 <삭제>	- 불필요한 생산설비 삭제
			○ 생산설비 세부설명 - 토오크게이지 : 0~20kgf.m이상 측정가능한 기기 1대 이상일 것	○ 생산설비 세부설명 - 토오크게이지 : 20kgf.m 이상	- 검사설비 규격 명확화
6	상업용오븐	기준 완화	○ 생산공장 - 제조시설면적 : 265㎡ 이상	○ 생산공장 - 제조시설면적 : 231㎡ 이상	- 제조시설 면적기준 완화
7	소방기	품명 변경	○ 세부품명 - 포소화약제	○ 세부품명 - 소화약제	- 세부품명 변경사항 적용
8	수문	기준 현실화	○ 직접생산 정의 - 수문(동력 및 비동력 수문 밸브에 한함)의 직접생산은 원재료(주조품, 주강품, 스테인리스강재 또는 기타 강재등)를 구입, (이하 생략)	○ 직접생산 정의 - 수문(동력 및 비동력 수문 밸브에 한함)의 직접생산은 원재료(주조품, 주강품, 스테인리스강재, HDPE 또는 기타 강재등)를 구입 (이하 생략)	- 기준 명확화
			<추 가>	○ 생산시설 - 필수 이행공정(도장)에 대한 생산시설(도장설비) 추가	- 기준 명확화
			<문구수정>	○ 수문(동력및비동력 수문밸브에 한함) 생산공정 문구수정	- 생산공정 명확화
9	여과기	문구 명확화	○ 공기여과기를 '필터가 팩 메디아인 등인 경우'와 '필터가 자동세정형인 경우'로 구분	○ 공기여과기를 '여과식공기여과기'와 '자동공기여과장치'로 구분	- 명확한 용어 사용
			○ 생산공장 - 사업자등록 : 제조(필터류, 공해방지시설, 집진기)	○ 생산공장 - 사업자등록 : 제조(필터류, 환경오염방지시설, 집진기)	-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명칭변경

연번	경쟁 제품명	구분	현재 기준	개정(안)	개정사유
			○ 공기여과기(에어필터)의 필터가 팩메디아 등인 경우에 대한 생산시설 참고사항 - 단, ⑦이 있는 경우 7종 이상	○ 공기여과기(에어필터)의 필터가 팩메디아 등인 경우에 대한 생산시설 참고사항 - 단, ⑨가 있는 경우 7종 이상	- 오타수정
			<추 가>	○ '여과식공기여과기'와 '자동공기여과장치'에 대한 세부설명 추가	- 제품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세부설명 추가
10	주차장치	문구 명확화	○ 생산시설 비고 - 공인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은 1년(준비기간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성적서만 인정)	○ 생산시설 비고 - 공인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은 1년<삭제>	- 불명확한 문구 삭제
			○ 생산시설 ③ 주차요금계산 S/W ④ 정기권관리 S/W ⑤ 서버연동 S/W ⑥ 기기관리 S/W ※ ③~⑥은 외주 가능 ○ 생산공정 - 원자재구입→가공·조립·제작(프로그램 장착포함)→검사→납품 및 설치	○ 생산시설 ③ 주차요금계산 S/W ④ 정기권관리 S/W ⑤ 서버연동 S/W ⑥ 기기관리 S/W <삭제> ○ 생산공정 - 원자재구입→가공·조립·제작(프로그램 장착 포함. 단, 프로그래밍 외주가능)→검사→납품 및 설치	- S/W의 외주가능의 의미는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외주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S/W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프로그래밍 외주가능함은 생산공정에 표기
11	취사용기구(가정용 제외)	기준 완화	○ 생산공장 - 제조시설면적 : 265㎡ 이상	○ 생산공장 - 제조시설면적 : 231㎡ 이상	- 제조시설 면적기준 완화
			○ 세부품명 - 업소용 곰솥 - 부침기	○ 세부품명 - 상업용 곰솥 - 상업용 그리들	- 세부품명 적용
12	크레인	기준 현실화	○ 직접생산 정의 및 생산공정 - 구조물	○ 직접생산 정의 및 생산공정 - 구조물(거더, 새들, 크래브, 레일 등)	- 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구조물 예시 제시
			○ 생산시설 - 천정크레인, 선반, 밀링, 드릴머신, 절곡기, 절단기, 용접기, 설계설비(CAD)중 세부품명 5가지 이상은 5	○ 생산시설 - 크레인, 드릴머신, 절단기, 용접기, 설계설비(CAD)	- 크레인 제조 필수 생산시설외 생산시설 삭제

연번	경쟁 제품명	구분	현재 기준	개정(안)	개정사유
			종 이상, 세부품명 5가지 미만은 4종 이상 보유		
			○ 생산공정 - 설계→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→구조물 등 제작→조립 및 용접→완제품 생산	○ 생산공정 - 설계→원재료 및 부분품 구입→구조물(거더, 새들, 크래브, 레일 등) 등 제작(철판 절단·절곡 외주가능)→조립 및 용접→완제품 생산	- 생산공정 완화 : 철판 절단·절곡 외주가능
13	탈취기	오기 정정	<오기 정정>	○ 탈취기 직접생산 정의 오기 정정	- 현재 탈취기의 정의가 탈수 및 배수장치에 대한 정의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
14	섬유로프	기준 완화	○ 생산시설 비고 -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	○ 생산시설 비고 - 임차보유 인정	- 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시설기준 완화
15	이부자리	품명 변경	○ 세부품명 - 의불(누비이불 포함), 매트리스패드(누비덮개용)	○ 세부품명 - 누비이불, 이불, 요	- 세부품명 변경사항 적용
16	천막류	기준 완화	○ 생산공장, 생산인력 - 개인·분대·일반·지휘용 천막 ·생산공장 : 330㎡ 이상, 생산인력 : 생산직 5인 이상	○ 생산공장, 생산인력 - 개인천막에 한하여 기준 완화 ·생산공장 : 165㎡ 이상, 생산인력 : 생산직 3인 이상	- 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개인용 천막에 대한 기준을 분리하여, 생산공장, 생산인력 기준 완화
17	토목섬유	기준 완화	○ 차수매트(PE도포방식) 생산공정 - 생산공정 : PE코팅 - 생산시설 : ④ PE용융설비	○ 차수매트(PE도포방식) - 생산공정 : PE코팅(외주가능) - 생산시설 : <삭 제>	- 기준 현실화
18	생선묵튀김	기준 완화	○ 생산시설 비고 -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	○ 생산시설 -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(단 냉동운반차량은 임차보유 인정)	-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생산시설 기준 완화
19	통(병)조림	기준 완화	○ 생산시설 ① 냉동, 냉장고 (50평 이상 각1기)	○ 생산시설 ① 냉동, 냉장고 (각 10평 이상 1기, 합산면적 60평 이상)	-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생산시설 기준 완화
			○ 생산공정 - 원·부재료→원료처리→캔(병)투입→탈기→밀봉→살균(멸균)→냉각→검사(10	○ 생산공정 - 원·부재료→원료처리→원료배합→캔(병)투입→탈기→밀봉→살균(멸균)→냉각→	- 생산시설 기준에 따른 생산공정 명확화

연번	경쟁 제품명	구분	현재 기준	개정(안)	개정사유
			일 이후 타관검사)→포장→출하	세척→프린트→검사(10일 이후 타관검사)→포장→출하	
			<추 가>	○ 자가품질검사서 추가	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적용
20	인쇄물	기준 명확화	○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(인쇄, 기획, 디자인에 한함)	○ 생산공장 <실사출력인쇄물 제외> ① 사업자등록(인쇄, 기획, 디자인에 한함) <실사출력인쇄물(프린터라벨)> ① 사업자등록(인쇄, 광고물 제작에 한함)	- 현재 인쇄물의 사업자등록 업종기준은 '실사출력인쇄물 제외'품목에 맞춰져 있어, 광고물 성격의 '실사출력인쇄물(프린터라벨)'품목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'실사출력인쇄물(프린터라벨)'의 업종을 별도로 구분
21	표시물	기준 명확화	○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- 콘크리트 조형물 : 23329	○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- 콘크리트 조형물 : 23329, 목재조형물 : 16299, 석재조형물 : 23919)	- 조형물 재질별 표준산업분류코드 구분하여 기준 명확화
22	가로등기구	기준 완화	○ 세부품명 - LED컨버터	○ 세부품명 - 전자안정기류(LED램프용 안정기 포함)	- 세부품명 추가에 따른 기존 용어 수정
			○ 검사설비 ③ 전압계 ④ 전류계 ⑤ 전력계	○ 검사설비 ③ 전압계 ④ 전류계 ⑤ 전력계 (③-⑤의 경우 파워미터 등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③-⑤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)	- 복합설비 인정
23	경관조명기구	기준 완화	○ 검사설비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 전력계	○ 검사설비 ② 전압계 ③ 전류계 ④ 전력계 (②-④의 경우 파워미터 등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②-④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)	- 복합설비 인정
24	도로표지판	기준 현실화	<추 가>	○ 제품 다양화에 따른 조명식·발광식 표지판에 대한	- 제품 다양화 반영

연번	경쟁 제품명	구분	현재 기준	개정(안)	개정사유
				기준 추가	
25	무정전전원장치(UPS)	기준 완화	○ 생산시설 ⑦ 파형왜율측정설비	○ 생산시설 ⑦ 파형왜율측정설비(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)	- 생산시설 명확화를 위하여 검사설비 종류 명기
			⑨ 감전보호시험기	- <삭제>	- 불필요한 설비 삭제
26	자동점멸기	기준 완화	○ 직접생산 정의 - (생략)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.	○ 직접생산 정의 - (생략) 9개 전체공정 중 5개 이상의 공정을 직접 이행하여 조명을 제어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.	- 직접생산 정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
			○ 가로등자동점멸기와 조명용제어장치 기준 구분 없음	○ 가로등자동점멸기와 조명용제어장치를 구분하여 조명용제어장치에 필요 없는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 삭제	- 세부품명 분리에 따른 적용
27	자동제어반	기준 명확화	<추 가>	○ 빌딩자동제어장치의 중앙감시반에 대한 직접생산 정의 추가	- 기준 명확화
28	전기스탠드	기준 완화	○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	○ 검사설비 ① 전압계 ② 전류계 ③ 전력계 (①-③의 경우 파워미터 등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①-③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)	- 복합설비 인정
29	충전장치	기준 완화	○ 생산시설 ⑦ 파형왜율측정설비	○ 생산시설 ⑦ 파형왜율측정설비(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)	- 생산시설 명확화를 위하여 검사설비 종류 명기
			⑨ 감전보호시험기	<삭제>	- 불필요한 설비 삭제
30	실내조명기구	기준 완화	○ 기타 ① KS인증(형광등, 등안정기류에 한함), KS인증 또는 안전인증(다운라이트, LED다운라이트, LED 실내조명등에 한함)	○ 기타 ① KS인증 또는 안전인증	-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형광등, 등안정기류에 대하여도 안전인증 인정
			<추 가>	※ 전압계, 전류계, 전력계의 경우 파워미터 등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해당	- 복합설비 인정

연번	경쟁 제품명	구분	현재 기준	개정(안)	개정사유
				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)	
31	구내방송 장치	기준 명확화	○ 생산공정 - 1개 부분품 생산→(생략)	○ 생산공정 - 1개 부분품(앰프, 오디오 믹서, 이퀄라이저, 채널 스위치, 오디오 분배기, 전원 분배기 등 부분품 1종 이상) 생산→(생략)	- 생산공정 명확화를 위하여 부분품 예시제시
32	교육용 및 실험용 과학기기	기준 완화	○ 검사설비 ③ 전압계 ④ 전류계	○ 검사설비 ③ 전압계 ④ 전류계 ※ ③,④의 경우 파워미터 등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는 복합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③,④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	- 복합설비 인정
			○ 생산시설 세부설명 - 전압조정기 : 완제품에 정전압을 공급하는 장비로 200V, 3KW이상	○ 생산시설 세부설명 - 전압조정기 : 완제품에 전압을 공급하는 장비	- 전압조정기 규격완화
33	다중화장치	기준 현실화	<추 가>	○ 검사설비(광파워미터) 추가	- 필수 검사설비 추가
34	전화교환기 네트워크연결장치	기준 현실화	<문구 수정>	○ 동보장치 및 배선반 직접생산정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○ 배선반 공정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○ 자동안내장치 공정명확화를 위한 공정 세부설명 수정	- 기준 명확화
			<추 가>	○ 동보장치 및 배선반 검사필수설비(디지털멀티메타, 케이블측정기) 추가	
35	폐쇄회로 텔레비젼 시스템	기준 명확화	○ 직접생산 정의 -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(차량번호판독기)의 직접생산은 캡쳐장치, 차량검지장치, 번호인식모듈S/W, 조명장치, 조명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며(생략)	○ 직접생산 정의 -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(차량번호판독기)의 직접생산은 캡쳐장치, 차량검지장치, 번호인식장치, 조명제어장치, 조명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며(생략)	- 기준 명확화
			○ 생산공정 비고 -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	○ 생산공정 비고 - 각 공정별 작업지도서(공	- 생산공정 비고란의 중복내용 정

연번	경쟁 제품명	구분	현재 기준	개정(안)	개정사유
			준 등 - 각 공정별 작업지도서	정도) 또는 작업표준서	리
36	맨홀 박스	기준 완화	○ 생산공장 ③ KS표시인증	○ 생산공장 ③ KS표시인증(하수도용 콘크리트맨홀블록에 한함)	- KS인증이 불필요한 하수도용 맨홀블록 외 제조업체도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
37	토양개량제	기준 완화	○ 생산시설 비고 -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	○ 생산시설 비고 - 생산시설의 임차보유 인정	- 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시설기준 완화
38	아스팔트 콘크리트	기준 완화	○ 생산공장 - 폐기물재활용 신고	○ 생산공장 - 폐기물재활용 허가	-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항 적용
			○ 생산시설 비고 -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	○ 생산시설 비고 - 생산시설의 임차보유 인정	- 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한 시설기준 완화
			○ 기타의 비고 - <없음>	○ 기타의 비고 - 원자재 매입 및 사용 관련 자료 (계산서, 수불대장 등)	- 원자재 사용실적 기준에 대한 증빙자료 기재
39	철근콘크리트근가	품명 분리	○ 철근콘크리트근가와 콘크리트기초 기준 구분 없음	○ 철근콘크리트근가와 콘크리트기초 기준 구분	- 세부품명 분리에 따른 적용
40	타일	기준 완화	○ 세부품명 - 그림타일, 도기질타일, 모자이크타일, 부조타일, 자기질 타일	○ 세부품명 - 그림타일, 도기질타일, 모자이크타일, 부조타일, 자기질 타일, 다소성패턴타일, 입체문양타일	- 세부품명 추가에 따른 세부품명별 기준마련
			○ 생산시설 - 소성기(가마)(면적 : 2㎡ 이상, 소성온도 : 800℃ 이상)	○ 생산시설 - 소성기(가마 : 1㎡이상, 소성온도 800℃이상)	- 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생산시설 기준완화
41	선박	기준 명확화	○ 용어 - 합성수지선	○ 용어 - 합성수지선(FRP선)	- 용어사용 명확화
			○ 생산공장 -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: 31111, 31112, 31113, 31119, 31120(5가지 중 1가지 이상 기재)	○ 생산공장 -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: 31111, 31112, 31113, 31119, 31120(5가지 중 신청 세부품명 해당 산업분류번호 기재)	- 기준명확화
42	자료처리 업무	품명 변경	○ 세부품명 - 데이터관리용역	○ 세부품명 - 데이터관리서비스	- 세부품명 변경에 따른 적용

연번	경쟁 제품명	구분	현재 기준	개정(안)	개정사유
43	[별첨 27-1]기계류 관련 자격증 적용 대상	기준 완화	○ 배관기사, 배관기술사, 배관산업기사	○ 배관기능사, 배관기능장, 배관산업기사	- 오타수정
			○ 열교환장치 <추 가>	○ 열교환장치 - 에너지관리기사, 에너지관리산업기사	- 자격증 적용 범위 확대